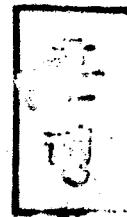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부 11360-*SKT*
 시행일자 1993. ~~4~~ 7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부 담당관	<i>본</i>		
법제계장	<i>운</i>		
기안	주정상 <i>부</i>		
			협조

제목 훈령발령

1.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761*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지수과장
 참조 훈령발령 통보

1. 지수13901-347(93.3.30)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생략). 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위원회~~부은영규정중 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3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장 9 원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

1. 개정이유

내무부 '93방재집행계획지침시달(방재 30820-245호)에 의거 서울시재해대책
본부 실무반 운영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완벽한 재해대책을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반장 4급공무원 2인을 3급이상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함 (안제9조제3항)
-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실무반 기존 7개반을 6개반(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구호대책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홍보 및 서무반)으로 편성함

(안제10조 ~ 안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풍수해대책법 제17조,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각국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음
- 라.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4급공무원인 반장 2인과 5급 이하"를 "3급 이상 공무원인 반장 1인과 4급 이하"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분석보고반) ①분석보고반장과 그 반원은 도시개발과·건축지도과·주택개발과·재개발과·도로시설과·녹지과·공원과·하수처리과·치수과 및 민방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분석보고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2. 재해위험시설 기능별 순찰·집김내역 및 조치사항 보고자료 작성
3. 재해사전에명활동에 관한 각종 기록유지
4. 재해상황 발생시 기능별 상황 분석 및 보고
5. 수해정보의 입수·분석에 따라 민방위대 동원발령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군병력·군장비(헬기등) 지원 계획수립 및 협조·협의를 위한 사항

제11조(상황관리반) ①상황관리반장과 그 반원은 하수국(설해대책시는 도로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상황처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황실 운영·관리 총괄
2. 각종 기상예·정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상개항 분석 및 보고
4. 중요인사의 현장방문 자료작성 및 문서수발
5. 한강수계의 홍수통제에 관한 사항(댐 수문조작 상황 및 수위전망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6. 피해통계 작성 및 보고
7. 접수된 피해상황을 해당과 및 유관부서에 통보
8. 관계기관의 수해대책에 관한 협의사항 추진

제12조(구호대책반) ①구호대책반장과 그 반원은 사회과·보건위생과 및 의약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구호대책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이재민 수용·구호조치 및 상황보고
2.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구호금품 수집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이재민 구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시
5. 수인성질병 등 예방약품 배정 및 보유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료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정지원반) ①행정지원반장과 그 반원은 총무과·인사과·행정과·하수행정과(설해대책시는 도로국 건설행정과)·예산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감사1담당관실·조사담당관실·교통기획과·운수1과 및 운수2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행정지원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구재해대책본부의 지휘·감독
2. 상황실, 차량의 관리, 통신망 구성 및 유지관리 사항
3. 본부요원의 근무지정 협조,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5. 수해 응급복구 대책업무 지원
6. 수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 예산조치
7. 이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8. 분부조직 및 운영관리
9. 풍수해 사전대책, 수방활동 및 복구상황 점검
10. 분부운영 및 수방단 근무상태 점검
11. 복구장비·물자수송(수방사재·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교통통제 제반 협조 및 협의 지시에 관한 사항

제14조(응급복구반) ①응급복구반장과 그 반원은 도시개발과·건축지도과·주택
 개량과·재개발과·건설행정과·도로시설과·녹지과·공원과·조경과·가스과·
 농축과·하수처리과·치수과·민방위과·비상계획과 및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②응급복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복구용 중기 동원 및 이동상황에 관한 사항
2. 수해응급조치·장비동원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의 지시협조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복구계획서 및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5. 피해상황 현지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복구사업 지도감독
7. 복구용 수방사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각 분야별 상황판 정리에 관한 사항
9. 재해발생시 시민의 대피유도·재산보호(경계강화)
10. 민방위대·수방단·수방기동대·인명구조대 등의 동원에 관한 사항
11. 수난구조 등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헬기지원 등)
12. 군병력·군장비 지원파악 및 협조

제15조(홍보 및 서무반) ①홍보 및 서무반장과 그 반원은 공보1담당관실·공보2담당관실 및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홍보 및 서무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예·정보 및 피해상황 보도에 관한 사항
2. 침수 및 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수해대책 보도에 관한 사항
4. 출연·방송·방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도매체의 안내·지원·통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국민행동요령 등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7. 실무반원의 복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상황실의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9. 중요인사의 방문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 및 통신지원반" 을 "행정지원반"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또는 공무원복무규정" 을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9조(공통사항) ①공문서상의 공 함 또는 결재에 있어서 실무반의 순위는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 반의 순으로 하며 각 반 의 관장사무는 본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공통사항) ①----- ----- ----- 제15조----- -----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각 반은 4급공무원인 반장 2인 과 5급 이하 공무원 4인 이상으 로 편성한다.</p>		<p>③----- 3급이상 공무원인 반 장 1인과 4급 ----- -----</p>	
<p>제10조(행정 및 통신지원반) ①행 정 및 통신지원 반장과 그 반원은 기획관리실·감사관실 및 내 무국 및 하수국 하수행정과(설해 대책시는 도로국 건설행정과) 소 속 공무원으로 한다.</p>		<p>제10조(분석보고반) ①분석보고반 장과 그 반원은 도시계획과·건 축지도과·주택개량과·재개발과 도로시설과·녹지과·공원과·하 수처리과·치수과 및 민방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②행정 및 통신지원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부조직 및 운영관리</u> 2. <u>실무반원 복무 및 후생</u> 3. <u>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4. <u>본부운영 집행 등 예산편성 및 회계물품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상황실 및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u> 6. <u>구개해대책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u> 7. <u>수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 예산조치</u> 	<p>②분석보고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해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u> 2. <u>재해위험시설 기능별 순찰 권집내역서 및 조치사항 보고자료 작성</u> 3. <u>재해사전예방활동에 관한 각종 기록유지</u> 4. <u>재해상황 발생시 기능별 상황 분석·보고</u> 5. <u>수해정보의 입수 분석에 따라 민방위대 동원발령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u> 6. <u>군병력·군장비(헬기등) 지원 계획수립 및 협조 협의에 관한 사항</u> <p>(삭 제)</p>

현	행	개	정
8. 상부기관 보고요청시 보고에 관한 사항		(삭 제)	
9.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 항		(삭 제)	
10. 본부 및 관계기관에 설치된 통신망의 장비점검 및 운영		(삭 제)	
11. 통신망 구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통신시설의 응급복구 지시 및 복구 협조요청		(삭 제)	
13. 본부내의 일반서무와 타 설 부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복구반) ①복구반장 및 반 원은 도로국·하수국·산업경제 국·환경녹지국·주택국·상수도 사업본부·지하철건설본부 및 중 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 다			제11조(상황관리반) ① 상황관리 반장과 그 반원은 하수국(설해 대책시는 도로국)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②복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 다.			②상황관리반은 다음 사항을 관 장한다.

현행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복구용 장비 등원 및 종사 명령에 관한 사항 2. 응급조치의 지시 및 보고자료 수합 정리 3. 피해복구 계획수립 4. 피해상황 현지조사 5. 복구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6. 복구사업 지도감독 7. 피해발생 상황의 파악·집계 8. 복구용 수방자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급수지원 조치사항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황실 운영·관리 총괄 2. 각종 기상예·경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상개항 분석 및 보고 4. 중요인사의 현장방문 자료 작성 및 문서수발 5. 한강수계의 홍수통제에 관한 사항(댐 수문조작 상황 및 수위 전망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6. 피해 통계작성 및 보고 7. 접수된 피해상황을 해당과 및 유관부서에 통보 8. 관계기관의 수해대책에 관한 협의사항 추진 (삭 제) (삭 제)
<p>제12조(정보 및 수난구조반) ①정보 및 수난구조반장 및 반원은</p>	<p>제12조(구호대책반) ①구호대책반장과 그 반원은 사회과·보건위</p>

현	행	개	정
<p>민방위국 및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생과 및 의약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p>		
<p>②정보 및 수난구조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②구호대책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재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보고</p>	<p>1. 이재민수용·구호조치 및 상황보고</p>		
<p>2. 재해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지시 또는 권고</p>	<p>2.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에 관한 사항</p>		
<p>3. 수난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헬기지원등)</p>	<p>3. 구호금품 수집 및 지급에 관한 사항</p>		
<p>4. 군 병력·군 장비지원 파악 및 협조에 관한 사항</p>	<p>4. 이재민 구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시</p>		
<p>5.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p>	<p>5. 수인성 질병 등 예방약품 배정 및 보유에 관한 사항</p>		
<p>6. 방재 신호사용 지도·감독</p>	<p>6. 기타 의료활동에 관한 사항</p>		
<p>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p>	<p>(삭 제)</p>		

현

행

개

정

제13조(총괄 및 기상반) ①총괄 및 기상반장과 반원은 하수국(도로국) 및 민방위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총괄 및 기상반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피해 통계작성 및 보고
2. 상황판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강우량·강설량 등의 파악 및 정리
4. 관계기관과의 재해대책에 관한 협의 사항 추진
5. 각종 기상예·정보 통보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재해에 관한 주의보 또는 경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7. 시간별 기상 및 수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제13조(행정지원반) ①행정지원반장과 그 반원은 총무과·인사과·행정과, 하수행정과(설해대책시는 건설행정과)·예산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감사1담당관실·조사담당관실·교통기획과·운1과 및 운수2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행정지원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구재해대책본부의 지휘·감독
2. 상황실·차량의 관리, 통신망 구성 및 유지관리 사항
3. 본부요원의 근무지정 협조,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5. 수해 응급복구 대책업무 지원
6. 수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 예산조치
7. 의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p>8. 한강수계의 홍수통제에 관한 사항(댐수문 조작상황 및 수위 전망에 관한 자료 수집)</p>	<p>8. 본부조직 및 운영관리</p>
<p>9.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p>	<p>9. 풍수해 사전대책·수방활동 및 복구상황 점검</p>
<p>(신 설)</p>	<p>10. 본부 운영 및 수방단 근무 상태 점검</p>
<p>(신 설)</p>	<p>11. 복구장비·물자수송(수방 자재·구호물자)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12.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수방단 근무상태 점검</p>
<p>(신 설)</p>	<p>13. 기타 교통통제 제반 협조 및 협의 지시에 관한 사항</p>
<p>제14조(구호반) ①구호반장 및 반장 및 반원은 보건사회국 소속</p>	<p>제14조(응급복구반) ①응급복구반장과 그 반원은 도시개발과·</p>

현

행

개

정

공무원으로 한다.

건축지도과·주택개발과·재개발과·건설행정과·도로시설과·녹지과·공원과·조경과·가스과·농축과·하수처리과·치수과·민방위과·비상계획과 및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구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구호물자 비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상황의 파악과 조정 통제
3. 소독 및 방역사항에 관한 파악과 조정 통제
4. 의연금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② 응급복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복구용 증기 동원 및 이동사항에 관한 사항
2. 수해응급조치·장비동원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의 지시협조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복구계획서 및 소요 예산 편성자료 작성
5. 피해상황 현지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복구사업 지도감독
7. 복구용 수방자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칭
(신 설)	8. 각 분야별 상황판 정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재해발생시 시민의 대피유도 재산보호(경계강화)
(신 설)	10. 민방위대·수방단·수방기동 대·인명구조대 등의 동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수난구조 등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헬기지원등)
(신 설)	12. 군병력·군장비 지원파악 협 조	제15조(수송반) ①수송반장 및 반 원은 교룡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홍보 및 서무반) ①홍보 및 서무반장과 그 반원은 공보1담당 관실, 공보2담당관실 및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p>②수송반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②홍보 및 실무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구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 2. 시민수송 및 물자수송(수방자재·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3. 교통통제(우회도로 협의) 및 협의지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예·경보 및 피해상황 보도에 관한 사항 2. 침수 및 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수해대책 보도에 관한 사항 4. 출연·방송·방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도매체의 안내·지원·통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국민 행동요령 등 각종 홍보에 대한 사항 7. 실무반원의 복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상황실의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9. 중요인사의 방문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보도반) ①보도반장 및 보

도반원은 공보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보도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홍보
2. 재해에 관한 주의보·경보 등 중요 기상자료의 보도
3. 피해발생 상황의 응급조치 사항의 보도
4. 피해복구계획 등 주요대책 관계자료의 보도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실무반원 복무) ①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은 행정 및 봉신 지원반에 신고하여 그가 근무할 반 및 조를 지정받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16조(보도반) (삭제)

제17조(실무반원 복무) ①-----

----- 행정지원반에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공무원 복
부규정에 의한다.

④-----

-----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

관 계 법 령

○ 풍수해대책법

제17조(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하 "방재 책임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도·시·군·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둔다.

○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지방재해대책본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 및 구에 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에 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이라 한다) 1인, 차장(이하 "지방차장"이라 한다) 1인, 통제관(이하 "지방통제관"이라 한다) 1인과 지방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지방본부장은 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되고, 지방차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가,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지방차장은 지방본부장을 보좌하고, 지방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방통제관은 지방본부장 및 지방차장을 보좌하며, 지방본부장의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감독한다.

⑤지방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본부로부터 지시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방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각 지방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본부장이 정한다.